

# 2021년도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17.(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4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26건(안전번호 제2021-65290호~6629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65290호~65309호(순번 1번~20번)는 블로그와 카페에서 일본 영상물(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65310호(순번 21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65311호(순번 22번)는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인 색칠공부 도안을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시정권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전번호 65312호~66295호(순번 23번~1006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14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4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 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2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006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0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 카페·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178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애니메이션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0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1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출판물을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 ‘●●●●●●●’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2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4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출판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1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2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를 통하여 영화 ‘▼▼▼▼▼’의 캐릭터를 이용한 색칠공부용 도안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총 1건).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이 작성한 원게시물을 블로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하였음.

각 색칠공부 도안은 원저작물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음. 국내 출판사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색칠공부 책을 출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각 색칠공부 도안 선화 및 이를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각 선화는 3D영상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의 한 장면 또는 한 캐릭터를 따와 선화로 제작한 2차적저작물임. ①해당 선화가 처음 게시된 해외 사이트에는 ‘▼▼▼▼▼’의 도안 30여개가 게시되어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중 6

개 및 '☆☆☆☆☆'의 도안 1개 총 7개의 도안을 게시하고 있음(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②원게시물의 작성자는 자녀의 색칠공부를 위하여 해당 도안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해당 도안을 단순히 사용하고자 하는 저장 목적에서 위 게시물을 스크랩한 것으로 보임(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게시물의 작성자는 쇼핑물 홍보의 목적 또한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③전체 분량 ★★★★★ 가량 애니메이션의 장면 또는 캐릭터를 단순한 선화 도안으로 만들어 소규모로 이용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식 색칠공부 책이 유통되는 것으로 미루어 해당 색칠공부 도안의 합법시장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 규모의 이용이 해당 시장에서 합법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2차적저작물의 이용으로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부결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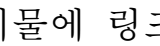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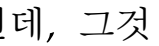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2번에 대해 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이 사안은 심의대상 게시물과 원 블로그 게시물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의대상 게시물과 원 사이트의 '▼▼▼▼▼' 게시물과의 문제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과 원 영상저작물과의 관계로 신고가 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에 따라서 스크랩한 것이고, 제공 기능에 따라 출처도 표시되어 있어 원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색칠공부 도안은 누가 만든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에서 가져온 것임.
- A 위원: ◎◎◎◎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3D로 되어 있는 것을 2D로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것은 알 수 없음.
- A 위원: 도안 자체는 ◎◎◎◎◎에서 만든 것이 아닐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아닐 것으로 추정됨.

- A 위원: 원 게시글 작성자가 도안을 만든 것은 아닌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링크된 외국 사이트 ‘’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임. 해당 사이트를 보여주시기 바람.
- A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시점에서 운영 중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점에 게시되어 있던 도안으로 보임.
- A 위원: 현재 이 사이트에 접속은 가능한 것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해당 외국 사이트에서 ‘’ 등의 도안을 제공 중인데, 그것 중에서 30여 개를 에 모블로그에서 가져왔고, 그것을 다시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가 스크랩해왔다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7개 도안을 원게시물이 가져왔고, 이를 심의대상 게시물이 스크랩한 것임.
- 심장섭 위원: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관련한 정품 도안 서적이 시중에서 판매 중에 있으므로, 동

사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다만, 게시된 규모가 6개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시정권고의 대상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외국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30여 개 중 6개를 가져왔다면 작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이 경우에는 외국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B 위원: 공중에게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해주었다는 의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럴 여지도 있다는 것임.
- B 위원: 도안 작성자가 ○○○○○○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 아닌지?
- C 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민원인의 요청사항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화 ‘▼▼▼▼▼’의 캐릭터를 침해한 것에 대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를 한 취지는 영화 ‘▼▼▼▼▼’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조치를 요청한다는 것임. 만일 도안을 만든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겠으나 동 사안은 그와 다름.

- A 위원: 국내 정식 라이선스를 받고 판매 중인 색칠공부 책과 블로그의 도안이 같은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다름. 해당 책은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을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 블로그의 도안과는 상이함.
- A 위원: 두 블로그 모두 운영 중인 상태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운영되고 있지 않음.
- B 위원: 운영 중지 상태이더라도 해당 블로그는 현재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색칠공부 도안이 ○○○○○○와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이용의 성립 가능성,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에 창작성이 부가된 것인데, 블로그의 게시물은 원 저작물에서 컬러를 제거하고 단순화된 된 것이라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 복제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공정이용의 성립 가능성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 영화의 핵심적인 가치를 스틸 이미지화된 캐릭터 자체에 있다고 본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단순히 소량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가 캐릭터를 활용해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음. 따라서 잠재적인 시장 또는 현재적인 시장 침해가 작다고 말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원 블로그와 해외 사이트 외에, 심의대상 게시물과 ○○○○○○와의 관계를 직접 생각해본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만, 동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 A 위원: 공정이용 제도가 저작권법에 도입된 취지를 고려 시 공익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도입한 것인데, 그런 취지에 맞게 이 블로그 운영자가 ○○○○○○ 저작물을 이용했는가를 볼 때 해당 제도의 취지와 달라 보임. 단순히 다른 블로그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을 공정이용 조항을 들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공정이용은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제한 여지가 있는지,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인용 또는 공정이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동 사안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부분에서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임. 운영자가 안쓰고 있는 블로그에 단순히 남의 글을 저장해놓은 것에 불과함.
- A 위원: 공정이용은 저작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정확히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임. 블로그 자체는 개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픈된 것이므로 사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이제 논점이 공정이용 해당 여부와 시장권고 여부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임. 심의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 A 위원: 현재 해당 블로그가 운영 중단 중이고, 공정이용이나 시장

대체 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 작성된 이 정도 사안까지 시정권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 오래 전 운영 중단된 블로그에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효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 시정권고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심의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시정권고의 실효성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임.
- D 위원: 이렇게 오래 전에 작성된 사안까지 시정권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부분이 있음을 인정함. 그러나 이미 시중에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색칠공부 도안 서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무단으로 이용 시 시장 대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높은 저작물이고, 민원인이 보호원의 기능을 신뢰하고 신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 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A, C 위원: 동 사안이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어떨지?
- B, D 위원: 이견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순번 22번에 대하여 두 분의 심의위원님께서 가결 의견을, 다른 두 분의 심의위원님께서 부결 의견이신 것 같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3번~100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워킹데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5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워킹데드'를 460캐시에 제공 중임. 시즌1 1~6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 AMC에서 2010. 10. 31. ~ 12. 5.까지 방송한 드라마임.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임. 왓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음악 '갈대의 순정'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2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악 '갈대의 순정'을 무료로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3시간 21초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신탁관리 중인 음악임. 멜론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14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140포인트에 제공 중임.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2021. 6. 16. 국내 배급한 영화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괴생명체에 맞서는 가족의 이야기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23번~100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23번~1006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3번~100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65311호(순번 22번)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건번호 제2021-65290호~65310호(순번 1번~21번), 안건번호 제2021-65312호~66295호(순번 23번~100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24.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